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 하에 전매제한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절차를 안내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계약자께서는 아래 일정 및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변경 접수 안내

공동명의 변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3 동심빌딩 3층) 26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접수(2/18제외) / 방문가능시간 : 평일 오전 09:30~11:00 오후 01:30~03:30
------------	---

■ 절차별 내용 및 구비서류

순서 및 절차	내용	구비서류		
		증여인(계약자)	수증인(배우자)	
① 사전예약	분양사무실 방문예약 : 02-6246-2477			
② 의왕시청 방문 증여계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 양식은 검인 날인 장소인 '의왕시청 민원동 1층 민원지적과'에도 비치되어 있음 '분양권 증여계약서' 등으로 별도의 양식을 검색·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도 무방, 지분표시必 <p>※ 배우자 공동명의의 경우 50% 또는 일부만 증여 가능하며, 지분 전부 (100%) 증여는 불가함</p>	<p>①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공급계약서 원본</p> <p>② 신분증, 인감도장</p>		
③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p>중도금대출 신청세대에 한하여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절차 진행 및 「채무승계 동의서」 수령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p> <p>※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관련 "상세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해당 은행(기 대출 영업점)으로 개별 문의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s://www.gc-jeil.co.kr) 중대금대출신청 안내문-해당은행 전화번호 참조</p>			
④ 분양사무실 공동명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사무실 방문하여 전매동의신청서 및 전매동의서 작성 <p>※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일체 주민번호 뒷 자리 모두 공개)</p> <p>※ 증여인(원 계약자)은 본인이 필히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리불가)</p>	<p>검인 완료된 증여계약서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p> <p>증여인(계약자)</p> <p>① 공급계약서 원본 ②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2부 (상세) ④ 주민등록표등본 2부 (전체포함) ⑤ 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이전 용 2부 ※ 매수인 인적사항에 수증인(배우자)기재 ⑥ 인감도장, 신분증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본인발급용</p>	<p>수증인(배우자)</p> <p>① 인감증명서 2부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② 인감도장, 신분증</p> <p>[분리세대인 경우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2부 (전체포함)</p> <p>[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수증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분양사무실 비치)</p>	
⑤ LH로 전매동의 일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로 전매동의 승인 이후 분양사무실 방문 사업주체에서 LH로 전매동의 일괄 신청 → LH로부터 전매동의 승인(영업일 기준 14일 이상 소요) <p>※ LH전매동의 승인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p>			
⑥ 계약서 승계/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 전매동의 승인 이후 분양사무실 방문 증여인, 수증인 방문하여 부부공동명의 계약서 승계/날인(별도안내) 	<p>증여인(계약자)</p> <p>①, 신분증</p>	<p>수증인(배우자)</p> <p>① 신분증</p>	
⑦ 증여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의무승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p>※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p>			
⑧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사전 서류문의 후 방문 잔금 완납 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하며,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의 변경은 불가함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잔금일부 납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필히 사전확인 필요 	<p>• 신고대상자 : 수증인 (증여받은 사람)</p> <p>• 과세 관할 :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p>		